

① 도로·교통 안전시설 점검

연번	5-1	지점명	매봉터널 교차로 (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6)	관리 기관	강남구청 수서경찰서
지점위치		매봉터널 교차로 동남측 보행섬 (강남구 도곡동 466)			

현황 및 문제점

· 언주로(남)에서 남부순환로(동) 진행방향 우회전 교통류의 주행속도가 높으며, 짧은 보행섬 연계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및 자전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, 보도측 식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시인성이 결여됨.

현장사진



개선안



참고사항

- (단기안) 이미지 과속방지턱 신설 : 관련근거<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시설 P.339>
⇒ 공동 주택, 근린 상업시설, 학교, 병원,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
- (장기안) 식수목 제거 및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: 관련근거<교통노면표시시설관리매뉴얼 P.103>
⇒ 제한속도를 30km/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.

연번	5-2	지점명	매봉터널 교차로 (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6)	관리 기관	강남구청 수서경찰서
지점위치		매봉터널 교차로 서북측 보행섬 (강남구 도곡동 466)			

현황 및 문제점

· 언주로(북)에서 남부순환로(서) 진행방향 우회전 교통류의 주행속도가 높으며, 짧은 보행섬 연계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및 자전거가 많으며, 특히 15년 발생 자전거 사망사고 발생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임.

현장사진



개선안



참고사항

- (단기안) 이미지 과속방지턱 신설 : 관련근거<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시설 P.339>
⇒ 공동 주택, 근린 상업시설, 학교, 병원,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
- (장기안)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: 관련근거<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 P.103>
⇒ 제한속도를 30km/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.

연번	5-3	지점명	언주로70길 (역삼푸르지오아파트 앞 길)	관리 기관	강남구청 수서경찰서
지점위치		역삼푸르지오아파트 앞 (강남구 역삼동 754-5)			

현황 및 문제점

· 공동주택시설 인접한 1 : 2 (왕복3차로)국지도로이며, 공동주택시설 진출입 차량들이 비교적 높은 통행속도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임.

현장사진



개선안



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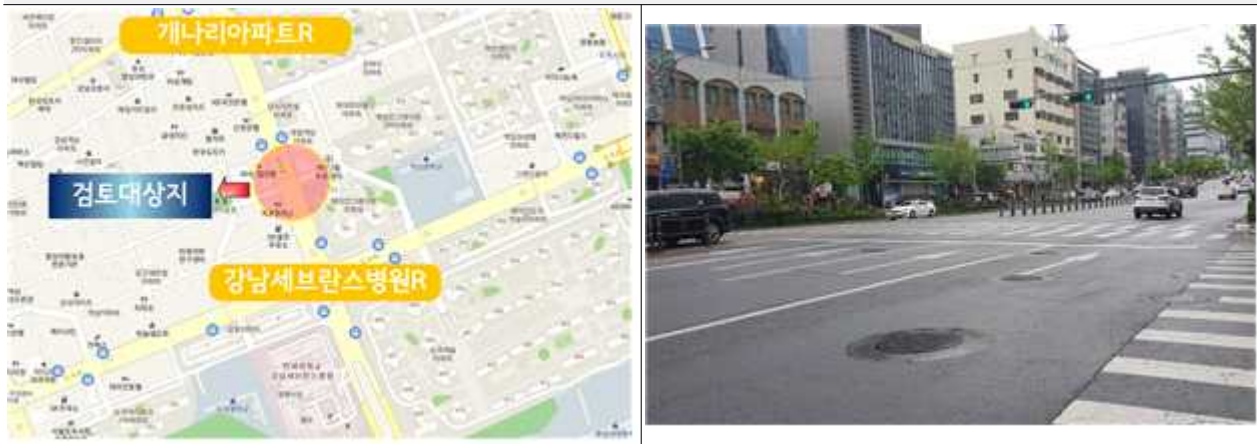
- 과속방지턱 신설 : 관련근거<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시설 P.339>
- ⇒ 공동 주택, 근린 상업시설, 학교, 병원,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

연번	5-4	지점명	언주로 도곡종합동물병원 앞 횡단보도 (도곡종합동물병원)	관리 기관	강남구청 수서경찰서
지점위치		도곡종합동물병원 횡단보도 (강남구 역삼동 805-32)			

현황 및 문제점

· 횡단보도 남측부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매우 인접하여(약 2m) 신호변환시간(황색신호)에 정지하는 차량들의 안전한 정지거리 확보가 필요하며, 중앙부 간이중분대 시점부 시인성 보강 및 무리한 보행자들의 도로횡단 방지가 요구됨. 또한 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근절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가 요구됨.

현장사진



개선안



참고사항

***단기안**

- 정지선 신설 : 관련근거<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P.92>
⇒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점에 설치 백색실선을 해당지점으로부터 2~5m 전방에 설치한다.
- 시선유도봉 신설 : 관련근거<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 P.5>
⇒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한다.

***장기안**

-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: 관련근거<교통단속 처리지침 P.19>
⇒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에 자동차의 속도, 신호,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